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7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한다.

별표 1의3 제1호다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2분의 1 범위”를 “2분의 1 범위[1), 2) 또는 4)에 해당하면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분의 3 범위]”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의 무상지원,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2”를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3”으로 한다.

하.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2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00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2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1,000

별표 2 제2호무목부터 수목까지를 각각 부목부터 우목까지로, 우목부터 푸목까지를 각각 추목부터 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무목 및 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법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8호	100	200	300
---	--------------	-----	-----	-----

주.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종사원을 둔 경우	법 제84조제4항제23호의2	100
---------------------------------------	-----------------	-----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1.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 2. 별표 1의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자동차의 결함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보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호·제5호	50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0		
나.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5항 제7호의2	10		
다. 법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호의2	100		
라. 법 제10조제1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호	50		
마. 법 제10조제3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3호	10		

바. 법 제10조제4항(같은 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 제1호	50	150	250
사. 법 제10조제5항(같은 조 제7항 및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3항 제2호	50	150	250
아.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내인 경우 3)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5항 제2호	2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4조제5항 제2호의2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20		
차. 법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6호	5		

2) 신고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신고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		
카. 법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 수출을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이내인 경우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7호	5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10		
타. 법 제22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3호	100	200	300
파.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예방 또는 해소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0호	50 50 10		

4)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한 경우		5		
하.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처리 요청 기간 내에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4호	100 1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 300		
거. 법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같은 항에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5호	150	300	300
너.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6호	50	150	250
더.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7호	50	150	250
러.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 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 반납 지연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2호	3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100		
며. 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제1호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경과 기간이 100일 이상인 경우		100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
버.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 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제8조제2항제7호의 전기·전자장치 중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제8조제2항제18호 중 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 2) 제8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7호(연료장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17호 중 광각 실외 후사경 및 같은 항 제17호의2 3) 제8조제2항제11호·제19호 4) 제8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차축은 제외한다), 제3호, 제6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7호(광각 실외후사경은 제외한다) 및 제18호(주행거리계 및 운행기록계는 제외한다)	법 제84조제4항 제13호	100 30 5 3
서. 법 제30조의3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4호	100
어. 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3호의3	100

저.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4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75일 이상인 경우 2)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나)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71일 이내인 경우 다) 경과 기간이 72일 이상인 경우 4)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제2호	600 6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2,000 1,000 200 2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600 600
처.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2호의2	500
커. 법 제31조의2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5호	100
터. 법 제31조의4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5호의2	100
퍼. 법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법 제84조제2항 제3호	

알리지 않은 경우 1) 경과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 2) 경과 기간이 5일 초과 24일 이내인 경우 3) 경과 기간이 25일 이상인 경우		300 30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500
허.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법 제33조제1항·제5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5항 제3호	50
고.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4조제1항 제3호	1,000
노. 법 제34조의3(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3호의4	100
도. 법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5호의3	10
로. 법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내압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는 제외한다) 2) 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 등 부속장치	법 제84조제4항 제13호의2	100 30
모. 법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4호	500
보.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5호의4 및 제15호의5	4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60		
소. 법 제45조제8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6호	10		
오.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 제작·수리 또는 수입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2) 사용에 관한 검정을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가)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나) 검정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다) 검정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7호	100 30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		
조.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8호	50		
초.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신고 지연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84조제5항 제6호의2	2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 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 태료의 총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코.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8호의2	30	50	70

토. 법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18호의3	40	60	80
포.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 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1) 연료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2) 그 밖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법 제84조제4항 제19호	20 3		
호.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0호	100		
구.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84조제5항 제9호	30		
누.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양도·양수 또는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1호	100 10		
두. 법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1호의2	30		
루. 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2호	30		
무. 법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 제8호	100	200	300
부. 법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2호의2	100		
수. 법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2호의3	30		

우. 법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 법인인 경우 2) 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3호			
		70 35		
주. 법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법 제84조제4항 제24호	30		
추. 법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4호의2	500	750	1,000
쿠. 법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4호의3	500	750	1,000
투. 법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5호	500		
푸. 법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2항 제6호	500		
후.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4조제5항 제8호	20		

◇개정이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 장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사실 은닉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종사원으로 고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 추정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고용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결함 추정 범위 확대(제8조의3)

종전에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으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 추정을 하지 않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자동차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사유 추가[별표 1의3 제1호다목3) 신설]

자동차제작자 등이 차량 무상점검 등 소비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 제고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최대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폐차 요청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제2호하목)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금액을 상향 조정함.

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별표 2 제2호무목 및 주목 신설)

-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종사원에게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지 않거나 준수사항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2) 자동차매매업자가 침수 사실 은닉으로 인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종사원으로 고용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